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59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의장 협의와 의장단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현안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협치 중심의 선진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의 원 : 서명일 · 김동엽 · 김원일 · 남재욱 · 박영주
박현재 · 변보미 · 이우완 · 차중현
황점복 의원(10명)

찬 성 의 원 : 곽은정 의원

1. 제안이유

교섭단체 운영 사항에 대한 의장 협의와 의장단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현안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협치 중심의 선진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표의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들”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대표를**”을 “**부대표, 사무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서·날인한**”을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

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실**”을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요청서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의원수	석
요청내역	
상임위원회명	성명
기획행정	
산업경제복지	
문화환경도시	
건설해양농림	
20 . . .	
위 요청인(교섭단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귀하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한다)----- ----- ----- -----.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대표, 사무국장을 ----- -----.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 -----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 ----- ----- ----- -----. -----.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	④ -----

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 5. (생략)

<신 설>

<신 설>

- 지체 없이 -----.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

대행) ① 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과 협의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 중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신 설>

2. (생략)

추천해야 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

- 1. -----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
- 2.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 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지방자치법

-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회법

-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2.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